제418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3호 (정기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사무처

- 일 시 2024년11월21일(목)
-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 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 5.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 7.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2)
- 8.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5)
- 9.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7)
- 10.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0)
- 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0)
-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3)
- 13.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9)
- 1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7)
- 15.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8)
- 16.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9)
- 17.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39)
- 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3)
- 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8)
-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0)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6)
- 25.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 26.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2)
- 27.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7)
- 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 2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 3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9)
-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17)

상정된 안건

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 3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 3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 3
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 3
5.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3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 3
7.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2) ····································
8.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5)
9.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7) … 4
10.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0)
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0)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3)
13.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9) … 4
1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7)
15.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8)4
16.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9)
17.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39)
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3) ···· 4
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8) … 4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4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0)4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4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6)4
25.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4
26.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2)4
27.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7)4
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4
2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4
3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4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9)4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17)

(10시00분 개의)

○**소위원장 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3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2차관, 방통위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 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 5.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 7.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2)
- 8.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5)

- **9.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7)
- **10.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0)
- **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0)
-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3)
- **13**.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9)
- **1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7)
- **15**.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8)
- **16.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9)
- **17.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39)
- **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3)
- **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8)
-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97)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0)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6)
- **25**.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 **26**.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2)
- **27**.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7)
- **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 2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 3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9)
-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17)

(10시02분)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제1항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학보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심사자료1이라고 쓰여진 소위 자료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19건의 인공지능 기본법안 중 7건의 대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조문별로 설명드렸으므로 이후 발의된 12건의 법안을 통합하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과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안을 지난 소위 대안과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지난 소위 대안과 현 대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간 인공지능사업자의 선언적 의무만 규정하고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의무부과 후 과기부장관의 사실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법안의 제명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하여 기본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을 보시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정의하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평가 영역을 고위험영역으로 추가하였고 다음…… 33쪽입니다, 33쪽. 고위험영역에 학생평가 영역을 추가하였고.

다음, 34쪽을 보시면……

- ○소위원장 김현 페이지가 좀 다른 것······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양면을 한 페이지로 지금 저희가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페이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면을.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33쪽, 페이지가 없는……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인공지능도 미국 행정명령 생성형 AI 정의를 참고하여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을 보시면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현행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참고해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제1항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을 보시면 제2항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표시의 의미는 워터마크 등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표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제3항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 중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는 것의 의미는 딥페이크임을 비가시적이 아닌 가시적으로 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워터마크는 보이지 않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반드시 가시적으로 표시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음, 84쪽을 보시면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의 주체를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서 인공지능사업자로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을 보시면 제34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을 보시면 제35조(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의무 규정이 아닌 인공지능사업자가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을 보시면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을 보시면 제40조(사실조사 등)으로 과기부장관의 자료제출·사실조사 및 중지·시정명령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을 보시면 제43조(과태료)로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금방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신 수정안은 같이 만든 정부안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지금 방통위원회는 이것에 대해서 따로 의견이 없는 것······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과기부 소관 법안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가 아마 축약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요약자료고……
- **○신성범 위원** 아, 이것 큰 것?
- ○소위원장 김현 예.
- ○**신성범 위원** 당분간 시간을 주시지요. 우리도 뭐 읽고……
- ○**한민수 위원**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 ○**김우영 위원**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 ○이해민 위원 이게 하나는 너무 많고 하나는 너무 축약이 돼서……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세요. 이해민 위원님.
- ○**이해민 위원** 이것은 너무 축약이 되어 있고 이것은 또 너무 양이 많아서 같이 제가

질문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정의 부분에서요 제가 전에 정부안 가져왔을 때 묵시적 또는…… 인공지능시스템 정의하는 부분이 몇 페이지지요, 지금 이 엄청나게 큰 자료에서?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30쪽에 보시면……

○이해민 위원 30쪽?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예, 좋습니다. 이게 반영이 됐군요. 이게 전에 2019년도 OECD 자료를 그냥 번역만 해 놨어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잘 반영이 됐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질문할 게 많아서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하고 계시는 중간에 제가 한 가지,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 중의 하나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고위험' 부분을 '고영향'으로 단어를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그동안은 영어로 치면 리스크(risk)를 우리가 그대로 직역한 게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는 EU의 AI Act나 미국의 AI 규제 논의에서도 점차 하이 리스크(high risk)보다는 임팩트(impact)나 이펙트(effect), 캐나다도 그렇고 영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 중이고.

제가 우리 공청회에서 네 분 나왔을 때 당시 네 분이 모두 다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 영향받는 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었습니다. 그게 왜동의를 하셨었냐면 이 큰 자료, 축약 자료에서 영향받는 자 부분이 구성에 있어요. 영향을 받는 자를 새롭게 규정을 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다니는데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영향(impact)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고위험보다는 고영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위험이라는 단어, 왜 EU에서도 임팩트(impact)라는 단어를 리스크(risk) 대신 쓰기 시작했냐면 위험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회피해야 할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좀 더 뉴트럴(neutral), 그러니까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유는 AI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AI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기도 해서입니다.

해서 저는 고위험 부분을 고영향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AI 기술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관리하려는 우리의 의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 중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장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것도 있지만 22대 국회가 내놓을 수 있는, 22대 국회 과방위가 내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 중의 하나가 AI 기본법인데 그 특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고위험이라는 단어 대신 고영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아마 정부안에서는 영향받는 자를 규정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예.

- ○이해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도 맞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수미상 응도 아니고, 이렇게 포함을 할 수 있도록 고영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장겸 위원 이게 지금 바뀌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안 바뀌어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아직은 안 바뀌어 있습니다.
- ○**김장겸 위원** 저 그것 읽어 봤는데 지금 이해민 위원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데요.
- ○소위원장 김현 얘기하시지요. 죽 얘기하시지요. 짧게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설명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이해민 위원 예.
- ○김장겸 위원 고영향 부분에 대해서 강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전체적으로 행정명령에서도 하이 임팩트(high impact)로 되어 있고요. 새롭게 트렌드가 들어서면서 우리 소위에서 논의만 해 주신다면 위원회의 새롭게 나가는 법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이해민 위원님, 계속 얘기를 할 게 있으세요?
- ○**이해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 ○소위원장 김현 아, 끝났습니까?
- ○이해민 위원 사항 하나씩 할까요, 아니면…… 많아서.
- ○**소위원장 김현** 죽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이해민 위원 아, 그럴까요? 예.
- ○**신성범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예.
- ○**신성범 위원**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이해민 위원님 말씀에 120% 동의합니다. 이게 리스크보다는 임팩트라는 표현이 훨씬 더 트렌드도 반영하는 것 같고, 저는 적극 찬성이고.

명칭에 관해서 이게 지금 인공지능산업 발전입니까, 인공지능 발전입니까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

- ○소위원장 김현 세 가지가 있어요. 발전, 진흥, 육성.
- ○신성범 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인공지능…… 만약에 말이 이게 산업 육성, 개발·이용, 발전 이렇게 되면 불편하면 난 명칭부터, 인공지능의 이런 게 좀 너무, 기본법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 이렇게…… 발전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산업도 아닌데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키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 ○소위원장 김현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메모를 해 놨는데, 이해민 의원안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거든요. 그게 반복이되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과 이용자에 대한 것하고 진흥에 대한 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발전, 신뢰…… 그런데이용에 대한 것이 권칠승 의원안도 있고 그래서 제목 죽 보면 발전이냐 진흥이냐 육성이냐……
- ○신성범 위원 고민을 아마 하셨을 텐데,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신뢰 기반 조성 내지는 인공지능의 기반 조성 이렇게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명칭부터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기본법이잖아요. 제정법이니까 정부 측이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 우리 수석전문위원 실하고 상의하면서……

수석께서 좀 설명을……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크게 진흥과 규제 양쪽을 다 담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한쪽은 진흥, 한쪽은 안전성 확보 등 규제 부분 그 2개를 다 담았다는 의미로 이게 들어가게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정부 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넘어오면 정부에서 약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칭을 사용할 때의 법제처의 해석과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던 데이터산업법도 실제로 데이터 기본법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본의 성격들이 약칭으로 빠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데이터산업법으로 약칭을 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소위에서 기본법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좀들어가야 되겠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본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민형배 의원안하고 한민수 의원안에 기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설명을 할 때 인공지능기본법으로 약칭을 해 달라고 해서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것이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련된 것들의 의미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산업 진흥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면서도 또이용자 보호처럼 느껴지는 게 또 조금 달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인공지능의 발전과또한 전체적으로 신뢰와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산업발전이라는 것도 조금 성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산업을 제외하고 인공지능 발전 및신뢰 기반에 대한 문제로 표현을 했고 기본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 ○신성범 위원 만약에 수석전문위원과 차관님의 설명대로라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는 명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담아도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 대안처럼 돼 있는 거지요, 수석님?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렇습니다. 수정의견이 대안입니다.
- ○**신성범 위원** 위원회의 대안이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이정헌 위원** 이정헌입니다.

저도 명칭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규제와 진흥 2개가 기본법 안에 다 담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발전이라든지 진흥, 육성다 좋은데 어감상으로 봤을 때 진흥도 나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 진흥 이게 '지능'과 '진흥'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발전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가장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발전을 쓴 건 괜찮고요. 신뢰 기반 이것도 좋다고 봅니다. 기본법안,

기본이 들어간 것도 충분히 타당하고요.

그리고 이해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영향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했던 부분들이 여기 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진흥이라든지 발전만을 생각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굉장히 큰 위험들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고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는 분명히 남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영향도 좋고 저도 찬성합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얘기하세요.
- ○**한민수 위원** 한민수입니다.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이렇게 수정된 건 잘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안이 말씀하신 대로 길게 하더라도 결국은 기본법안, 기본이라고 들어가는 건 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텐데 정말로 금지 AI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지 또 논의가 되면 수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명칭 하나가 주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해민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또 전문가니까 검토해서 했겠지만 딱 드는 생각은 여러 가지부작용이랄지 AI의 위험성이랄지, 그러니까 진흥과 규제, 발전과 규제의 양 측면이라고한다면 고영향이라는 표현이…… 영어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한글로 주는 고영향이라는 표현이 그게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이런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위험 하면 확실히 이것에 대한 규제 측면이랄지 보통 우리 기본생활에 대한 유해요소랄지 이런 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영향, 저영향 이렇게 하면 약간은 좀 뉘앙스도 다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용어에 대해서는 의미는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또 얘기하시지요.

박충권 위원님 얘기하세요.

- ○박충권 위원 저도 한민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고영향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보다는 고위험이라고 해서 좀 범위를 좁히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김현** 또 얘기하실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해민 위원 우선 제목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제목 같은데 인공지능 발전이라는 말 대신 인공지능산업 진흥이라고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수석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기술을 놓고 산업의 발전 그다음에 이용자를 위한 보호, 규제 부분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하나는 기술이나 인공지능 발전 하게 되면 마치 컴퓨터사이언스과에서 인공지능을 더 열심히 발전화시키는 건가 이

런 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자 한 면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대한 기본법안, 우선 인공지능 발전을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이정헌 위원님 말씀에 '인공지능 진흥'이 어감상 이상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되게 세밀한 부분이지만 또 동의를 하고요. 해서 기본법안까지……

신뢰 기반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게 영향받는 자의 설명요구권이 추가가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해서 그것과 함께 간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수정의견, 정부에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정헌 위원 저도 대표발의한 법안 안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산업을 넣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도 꼭 산업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연구 라든지 또 학술 이런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으로 한 정지을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정부안으로 제출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지요?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 ○노종면 위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다시 수정할 기회가 없는 겁니까?
- ○소위원장 김현 아니요, 방망이 치기 전에는 다 가능하고요. 전체회의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명에 대해서는…… 제명입니다, 제목이 아니라. 여기가 그렇게 구분이 제명으로 돼 있어서 제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의의 구성에 아까 고위험과 고영향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도 고위험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표현을 그냥 써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민 위원님이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별도로 있습니까?

○김우영 위원 그런데 인공지능을 구분할 때 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아를 갖느냐, 그래서 자아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건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고위험, 고영향 그걸……

도대체 위험하지 않은 인공지능이 어디 있겠고 영향의 강함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저는 강한 인공지능 이게 더 학술적으로도 맞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인간의 의사결정 수준에 육박하는 자기 스스로의 결정권을 갖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일수록 거기에 따른 책임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고 그책임에 따른 여러 가지 처벌조항이라든가, 또 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생되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고위험이냐 그렇지 않냐, 영향이 고영향이냐 작은 영향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조금은 모호하다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소위원장 김현 이렇게 길어지면 그냥 기존의 것으로 가는 게 통상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이건 조금 뒤로 빼고 또……

○이해민 위원 그거 하나만, 지금 방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큰 자료를 보시면 고위험, 지금 여기서 고위험영역인 인공지능 범위가 주루룩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위험 혹은 고영향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세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위험'이라는 단어보다 왜 글로벌이 '영향'으로 가냐 하면 영향은 그 영향에 위험성도 포함을 할 수 있고 영향의 사이즈도, 범위도 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고위험으로만 가면 어감이 주는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범위를 규정하기가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안을 만듦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 또한 커지면 그것 또한 고위험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위험이라고 가는 것은 너무 옭아맬 수밖에 없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산업 진흥 대신 인공지능발전이라고 썼듯이 조금 더 그릇을 담는 것을 그릇을 크게 만드는 측면에서는 영향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큰 그릇은 변화를 시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해서 큰 그릇 쪽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의견 동시에 드립니다.

○김장겸 위원 저는 이해민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이게 길어지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도 그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뭐 공감하지만 일단은 기본법을 만드는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논란은 저희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저도 의견을 하나만 보태 볼게요.

법안을 준비하신 위원님들보다 이해도가 떨어져서 논란을 합리적으로 하는 데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규제를 하려고 고위험영역을 정의해 두는 게 맞지요, 뭔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또는 금지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영향이 많이 간다고 금지해야 하나,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은 커요. 그렇다고 금지하나요?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위험과 영향이 이게 규제 대상, 금지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주세요.

앞서 우리가 수석전문위원 얘기를 죽 듣고 정부 입장을 죽 들었으니까 지금 큰 표로, 이 축약된 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동일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거나, 그다음에 인공지능기술은 같고 그다음에 금지된 인공지능이라는 게 권칠승 의원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아까 고위험, 고영향이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도 특별히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김우영 위원** 이건 뭐 별 그게 없을 것 같은데요.

- ○**소위원장 김현** 예, 없을 것 같고요.
- ○**이해민 위원** '금지된'이 지금 들어갔나요, 수정의견에?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빠졌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금지된 인공지능은 한 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가고요.
- ○이정헌 위원 인공지능사업자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 ○**소위원장 김현** 잠깐만요.

인공지능윤리와 인공지능산업 이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사업자 말씀하세요.

○이정헌 위원 제가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AI 기본법에 꼭 챙겨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사업자 그다음에 이용자를 규정하는 부분이 좀 더 세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 또 공급하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서 이걸 세밀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 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법안을 보니까, 언뜻 봤습니다만 아주 세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러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EU의 법체계와 내용들도 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인공지능사업자를 일반적으로 정리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 해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 그리고 그 개발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발된 인공지능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켜서 새롭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용사업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두 가지로 세분화하면서 총괄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라는 표현까지 포함을 해서 주신 말씀처럼, 현행법에 보면 더욱 세분화되는 법의 지적과 내용들은 많지 않고 해서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포괄할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들은 이용자 부분들이 남을 거고 또 더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자라는 별도 정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 법체계에서도 현재로서는 두 가지 체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계적인 입법례도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한민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35페이지에 있는 대로 '인공지능사업자'로 하고 그 하부로 '개발사업자', '이용사업자'로 구분한다는 그 얘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 ○**한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우영 위원 인공지능윤리는 특별한 이의가 없나요?
- ○소위원장 김현 이견이 없는 걸로 넘어갔어요.
- ○**김우영 위원** 그런데 윤리에서 핵심적인 게 인공지능이 알고리즘 사회가 되면 확증편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누르면 계속 그 좋아하는 것만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양극단 사회가 나타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윤리에서 지적하는 한

측면을 통합성, 어떤 극단성에 대한 일정한 보완 그런 부분이 윤리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안 법률에 보면 '인공지능윤리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 기 위하여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이 렇게 돼 있는데 개인의 윤리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지속 가능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극단성에 대한 보완, 확증편향에 대한 일정한 보완점을 윤리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소위원장 김현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의 4쪽에 보면 11항에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편향성, 확증편향 극복 이런 건가요, 지금?

○김우영 위원 예.

- ○소위원장 김현 제가 볼 때는 윤리적 기준이라는 게 다 포괄되는 것 같아요. 우려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제어를 해야지 기본법에 들어가는 거는 좀······
-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에서 주로는 생명과 재산 보호 이런 건데 거기에 사회 전체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윤리는 인권보호나 이런 거를 포함하지만 더또……
- ○**소위원장 김현**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 ○**김우영 위원** 존엄성인가요? 사회 자체의 공동체성이라든가……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의견 얘기해 주시고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년부터 인공지능윤리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문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한번 개정도 이루어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윤리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담을 때 있어서 굉장히 포괄성이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 전체를, 세부적인 윤리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데이터의 편향성 그다음에 개방성 그다음에 투명성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 이런 부분을 거의 담아서 개발자의 개발지침까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부분으로 법에는 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충실히 지금 담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번 법에 의해서 다시 법적인 윤리기준으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라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장님, 참고로 망법에서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관심 주제로 계속 추천하고 이런 거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들어와 있 습니다, 개별법에.

○김우영 위원 망법에?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 ○소위원장 김현 정보통신망법에.

예, 그렇게 가지요.

○**이정헌 위원** 단어 선택하고 문장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툭툭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인공지능사업자 부분에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에서 이게 제공일지 공급일지 보급일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선택입니다. 어쨌든 제공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4페이지의 11번 인공지능윤리에 있어서도 '제작, 개발'…… 제공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보급을 썼으면 앞부분에도 보급을, 인공지능개발사업자 할 때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자'로 하든지 단어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는 없습니다만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간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새롭게 들어가는 단어인데,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와 전혀 다른 뉘앙스의 또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은 적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공을 쓰든지 보급을 쓰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 ○김장겸 위원 11호의 그걸 제공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 ○이정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11번에서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익과 생명·재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어로 해서 주격조사 '이'를 썼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모든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주격조사를 써서 주어로 흘러가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으로 봐서는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 흐름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문이라든지 법률안을 보면 굉장히 지나치게 문어체, 딱딱하고 주어라든지 술어들이 반복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조문들을 확정할 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이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아까 단어 선택에서 보급인지 제공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시고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영위는 무슨 말이에요, 7호의 영위?
- ○이정헌 위원 운영하고 보위하다. 운영하다. 지키다 이런 건데……
- ○소위원장 김현 '사업을 하는 자' 아닙니까? 한다는 거에 다 들어가는 거지. 역전앞 아닙니까? 영위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일본식 표현, 그다음에 한자를 과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법을 만들 때는 초등학생부터 읽었을 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도록.....

○이정헌 위원 그렇지요. 바꿔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주격조사를 쓰는 부분이 바로 그 밑에 있는 기본원칙에 보면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11번처럼 쓴다고 한다면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면 '안전성과 신뢰성이 제고되도록'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성과 신뢰성이 제고되도록'이라는 표현을 써야 위에도 권익과 생명과 재산이 중요해서 주격조사를 썼나 보다 하는 건데 위에는 주격조사를 쓰고 밑에는 또 목적격으로 썼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고, 단어 선택을 새로운 단어를 쓸 때는 왜 이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쓰면 나중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민수 위원** 나중에 이거 다 체계·자구 수정하지 않아요?
- ○소위원장 김현 예, 체계·자구 수정할 때, 오늘 처음 이걸 본 거니까 위원님들이 좀 의견을 줘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마지막······ 그거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요. 의견은 내 주시고요.
- ○이해민 위원 이정헌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11번에 '보급'이면 앞에도 이게 잘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셔서 저도 한번 다시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됐는데, 아마 보급을 사용하신 것은 '가', '나'에서 개발사업자를 임플러멘터(implementer) 그다음에 이용사업자를 디플로이어(deployer) 그래서 디플로이어 때문에 보급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넣으시려면보급 앞에 제공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면, 병기되면 충분히 다 담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짧은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런데 사실 제공에 공급과 보급이 다 포함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제공이 된 거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 ○**이정헌 위원** 그렇게 본다면 뒤에 있는 제작도 필요 없는 것이지요, 앞에는 그냥 개발 하고 제공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 **○소위원장 김현** 여기 11은……
- ○이정헌 위원 인공지능개발사업자 할 때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해서 두 단어만 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뒷부분에서도 그냥 개발하고 제공을 쓰든지 제작을 쓰려면 제작, 개발도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명확하게 규정하시든지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일단은 알겠고요. 넘깁시다.
- ○**노종면 위원** 아니, 정의 5호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모방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 ○소위원장 김현 이거 변호사가 쓴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법무법인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 ○노종면 위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위원님, 인공지능국장입니다.

여기서 모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패턴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패턴이 구조화돼 있는지를 보고 그 패턴에 대한 일률적인 일관된 양식을 끄집 어내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조와 특성을 모방한다는 의미는 데 이터를 넣어 가지고 그 데이터의 패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의미라면 더더욱 이 모방이……

- ○**소위원장 김현** 이게 맞아요.
- **○노종면 위원** 맞아요?
- ○소위원장 김현 예, 맞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제가…… '모방은 다른 개인이나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사회적 학습의 일종으로 전통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며 유전적 상속 없이 사람 간에 정보세대에 걸쳐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방은 단순히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유행이나 전통의 계승 과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과 문화에서 창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예술작품에서는 창조를 모방보다더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사회집단 내에서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위, 사회결합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 그래서 생체모방……'이게 챗GPT로 지금 얘기를 검색한 건데요.

○노종면 위원 그거는 의미 차원에서는 그런데 절차적 관계에서의 행위로 보면 행위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생성형이. 거기서 하나하나를 따온다는 뜻이잖아요. 따오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걸 추출해서 재조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 내는 건데, 그래서 제가 대안은 없는데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고민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게 그래서 21대에 못 한 것 같습니다.
 - 그다음에 기본원칙, 저희가 11호까지 갔고 제3조 기본원칙과 관련해서……
- ○김우영 위원 원칙은 뭐 다 원칙적인……
- ○소위원장 김현 원칙 넘어갑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견이 없는 걸로, 정의도 그냥 넘어갔으니까……
 - 적용범위도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이 있는데 이거는 적용범위는 이견이 없습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시지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지금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기본법 외에 다른 법률 제·개정시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것.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것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 ○**이정헌 위원** 4조에 하나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예.
- ○이정헌 위원 자꾸 제가 문법적이거나 자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툭툭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이 아니라 '이뤄진'이 정확한 표현 이거든요, 문법상으로. 그런데 이게 법률에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바꿀 수 있는 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뤄진……
- ○**소위원장 김현** 그다음에 다른 법률 관계 넘어가고요.
 -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입니다.
 -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3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 의결 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고.

그다음에 민형배 의원이 얘기하는 지역위원장의 지역 인공지능 종합계획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봅시다.

인공지능위원회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요 저희가 앞에서 사용자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과 영향을 받는 자가 추가가 됐는데 지금 인공지능위원회에는 영향을 받는 자를 대표할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거 더하기 영향을 받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냐면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아까 우리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야지 더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AI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거는 영향받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국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페이지를 얘기해 주실래요?
- **○이정헌 위원** 7쪽,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소위원장 김현** 거기를 보고 있거든요.
- ○**이해민 위원** 7쪽에서 '정부위원' 그다음에 '민간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8쪽의 4번 항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 ○이해민 위원 맞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민간위원이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 ○이정헌 위원 국회의 추천?
- ○이해민 위원 잠시만요. 제가 제 안을……
- ○소위원장 김현 이해민 의원안에는 '민간위원 중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20인 이상, 영향받는 자 대표자 1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해민 위원 예, 맞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런데 여기 국회 추천은 또 이 안에는 없어요.
- ○이해민 위원 거기에는 지금 다 빠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원래 제가 올린 안에는 있는데 그거 잠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을 좀 주면요?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45쪽에 보시면……
- **○이해민 위원** 45쪽, 큰 거 45쪽.
- ○**소위원장 김현** 이해민 위원님, 잠깐만요.

대통령이 위원장인 경우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그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절차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각계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또 협회나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국회 추천의 입법례가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확인 좀 해 주세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이게 행정위원회나 독립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국회가 추천한다는 의미라는 거는 굉장히 높게……
- ○소위원장 김현 그거는 국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거나 제정당, 시민단체에서 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어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책임까지 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국회 추천 몫이 들어가는 건 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해민 위원 참고로 45페이지의 4항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밖에 영향받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 안전, 인권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어쨌든 뒤로 가지 말고요. 지금 이 항목에서는 그냥 인공지능위원회 여기 원안으로 가는 게······ 책임지고 하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각종 위원회의 입법례는 현재의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렇게 맞춰서 가는 걸로 하는 게······
-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정부 쪽에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하에 있는 것은 맞는데, 저도 제안을 하면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AI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빠져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향받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안전, 인권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했는데요. 국회의 추천을 받은, 사실은 제가 이걸 아이디어를 받은 것은 되게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에서 국회 추천을 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넣어 놨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계획도 수립하고 아주 많은 것을 하는데 거기에 인권 및 교육, 안전, 노동 관련 전문가, 영향받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의견으로 일단은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장님, 참고로 지금 통과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 추천위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지금 보복위에 계류돼 있고 그렇습니다. 확정 여부는 한번……
-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으로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위원회 그렇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시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기능 넘어갑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인공지능센터입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분과위원회, 인공지능센터, 인공지능안전연구소까지 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까지.

의견 없으십니까?

- ○한민수 위원 작시……
-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한민수 위원** 9페이지의 8조 5항 보면, 지금 위원회의 기능 보는 거 아닙니까?
- ○**소위원장 김현** 위원회의 기능에서……
- ○한민수 위원 기능에서 5호 보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거하고 10호는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이런 게 있는데 뒤에도 고위험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충돌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하고. 그다음에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가지고, 규제를 찾아내서 아마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미 같기는 한데 약간 충돌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충돌이 되지요. 충돌되는 게 맞는 거지요.
- ○한민수 위원 충돌을 일부러 시켰군요.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의견 있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과 규제 발굴과 개선은 인 공지능 발전을 위한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현행법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규율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들로 법에 되어 있는 고위험 부분들은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문구의조정 문제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규제 완화 부분은 반드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지능센터까지 해서 연구소까지 넘어갔습니다.
 - 이혜민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여기 법에…… 그냥 넘어갑니까? 괜찮습니까?
- ○이해민 위원 예.
-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제3장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13조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3조 넘어갑니다.

14조 표준화, 의견 없습니다.

학습용데이터 수립, 특별히 의견 없는 걸로 되고요.

그다음에 2절의 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이것도 의견이 없습니다.

황희 의원이 실용화·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이 부분의 의견인데 이것도 그냥 갑니다.

그리고 17조, 별도 항목이 있으니까요 거기 넘어가고요.

18조(창업의 활성화) 넘어가고, 의견 없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창업의 활성화 전에 '인공지능융합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규제특례 지원'이렇게 법안에 돼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도……

- ○이해민 위원 예.
- ○**소위원장 김현** 넘어갑니다.
 - 그다음에 창업의 활성화 됐고요.
 -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다 동일하고.
 - 제도개선, 전문인력의 확보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 그다음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 그다음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은 좀 봐 주십시오.

배준영 의원안에 국세·지방세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안에 지역별 인공 지능산업지원센터 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지요? 항목이 다 있어요, 사실. 다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조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에 대한 추진, 넘어가고요.

이거 하려면 정말…… 과기부 이것만 해도 바쁘겠어요. 인공지능진흥협회 설립하고 전 문연구소 만들고…… K-OTT 축소한 건 잘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율…… 넘어가겠습니다.

죽 한번 보시지요. 이거 다 보신 거니까……

그다음에 규제 일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

- ○**한민수 위원** 이거는……
- ○소위원장 김현 말씀하세요.
- ○한민수 위원 25페이지에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가 1항 같은 경우는…… 2항이 인공지능사업자잖아요. 그러면 1항이 개발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 ○한민수 위원 여기가 그런 의미인데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연구기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사업자를 두 가지로 나누었잖아요. 개발과 진흥 이렇게 나누었는데 다 포함시킬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위원님, 인공지능국장입니다.

1호는 R&D라든지 대학의 연구기관들도 인공지능을 개발함에 있어서 윤리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섭되는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민수 위원**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개발자와 2개를 포함 다 한다는 얘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시책 마련,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넘어가겠습니다.

투명성 다 들어가고요.

마지막까지 죽 보시지요. 30쪽, 31쪽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고 위험영역 인공지능의 확인,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영향평가, 국 내대리인 지정까지, 32쪽까지.

- ○이해민 위원 제가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검·인증 지원 부분이 지금 몇 쪽일까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법안으로는 35페이지입니다. 30조 밑에 있습니다.
- ○이해민 위원 35페이지고 그리고 이거 주신 거로는 27페이지, 제30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30조 맞습니다.
- ○이해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반영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및 조치의무 부분은 몇 쪽인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시정조치는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40조입니다, 위원님.
- ○**이**해민 위원 40?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님, 이 자료로 보셔야, 마지막에 추가돼서 이 자료는 아마 사실조사까지는…… 아, 있습니까? 40조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40조입니다.
- ○이해민 위원 40조(사실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너무 필요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산업진흥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너무 과중한 의무를 주고 있는데…… 과중한 의무를 줄 수 있지요, 안전을 위해서는. 하지만 과기정통부장관이 범부처적인 인공지능사업자 관련된 것을 이렇게 강하게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사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새롭게 추가한 조항이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뒤에 있는 사실조사, 실태조사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공청회 결과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걸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포함이 됐던 부분입니다. 법의 실효성문제를 공청회 때도 많이 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 ○**소위원장 김현** 사실조사를 어딘가에서는 하는 게 맞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런데 이게 과학기술부가 혼자 감당을 하느냐, 아니면 전 부처에서…… AI 관련한 기본법을 만들면 다른 부처도 연관되어 있는 부처들과 기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조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수석전문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이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대상이 심사자료1 100쪽을 보시면 비고에 사실조사 후에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는 의무가 31조의 투명성 의무, 32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 그다음에 33조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확인, 그다음에 34조의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 사업

자 책무, 그다음에 36조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 의무 규정이나 책무 규정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고지를 안 한 경우에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일단 과기부가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시정명령할 것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과태료 규정 들어가기 전에 일단 사실조사 먼저 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 명령을 내린 다음에 시정명령을 어길 때 과태료 이런 의무의행 확보수단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일단 사실조사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기본적인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 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이견이 없다는 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과징금이라든 지 이런 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서 과태료 3000만 원 정도는 적정하지 않은가 해서 이런 체계로 두게 된 겁니다.
- ○**이해민 위원** 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거 큰 거, 두꺼운 이거 90페이지 봐 주시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시정조치 및 조치의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뒤에는 벌금 이렇게 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뒤에 처벌 규정에 넣었는데요. 제가 지금 정부안에서 주신 40조에 대해서 문제시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이거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일까? 아닌 것 같아서 40조에 대해서는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충권 위원 저도 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과태료가 일괄적으로 3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규모가 상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것같고 중소기업은 큰 게 될 것 같은데,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행정벌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이 절차들이 어찌 보면 입법에 있어서는 사실조사, 시정명령 거기다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어지 는 거고 과태료는 행정벌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사업자에, 기업에 비례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징금 문제나 그 이후의 문제들 도 벌칙조항으로 같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실효성 확보 수단을 넣자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면 이 런 절차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이 건은 행정벌을 정리하는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체가 필요한데 그 주체가 또 과하게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법의 주관 부서로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김현 지금 이해민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강제해서 조치 의무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인정되면 '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의무조항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도 조항으로 사실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가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보는데요.

그리고 과기부가 이런 것 열심히 안 해요. 시정조치 의무 이거 별로 안 해요. 그냥 놔두는 게 많아요, 과기부는. 공정위 같은 데 가야지 좀 세게 규제를 가하는데 과기부는 진흥부서 아닙니까, 규제보다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 ○소위원장 김현 규제는 좀 뒤에 하잖아요. 진흥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동안 해 왔던 걸 보면.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법체계 문제여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부도 돌리면 또 다양한 주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 ○**이해민 위원** 우선 받기로 하고요.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현 과기부가 과하게 할까 봐?
- ○한민수 위원 그 얘기야. 세게 할까 봐.
- ○소위원장 김현 과하게 할까 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원래 정부가 생각했던 안에는 이 실효성 확보 방안이 사실은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나 실효성 확보 방안에 어떻게든지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실과 같이 상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다음에 이해민 위원님은 5000만 원으로 더 높였는데 그냥 3000만 원 이하로?
- ○**이해민 위원** 사실 더 하려다가 5000만 원으로 내린 거긴 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런데 이거는 과태료가 그렇다는 거고요.
- ○**이해민 위원** 예, 과태료요.
- ○소위원장 김현 이건 형법이나 민법에 또 저촉이 있으니까, 과태료 3000만 원 이하가 통상 기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과태료 500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다 싶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과태료는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예, 일단은 3000만 원으로 가고.
- ○이해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나중에 다른 차원으로 규제하는, 규율하는 걸로 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영향과 고위험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되면 일단 은......

- ○**이정헌 위원** 예, 이제……
- **○소위원장 김현** 말씀하세요.
- ○**이정헌 위원**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사를 계속 데스킹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직업병처럼 툭툭 걸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자구 수정 과정에서 분명히 걸러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셀수 없이 많은 실수들이 있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

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법률안을 만들 때 함께 항상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술 방망이처럼 쓰는 한 음절짜리 단어가 있습니다. 에트 세트라(et cetera), etc, 등이 있지요, 기타 등등.

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사를 쓸 때에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취재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이 없을 때 '뭐뭐 하는 등'이라고 씁니다. 그건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법률안에 굉장히 '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좋은 기사나 제일 좋은 법률안은 '등'이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못 할 경우에,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같을 때 '등'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등'을 쓸 때는 띄어쓰기 할 때 반드시 앞에 있는 문장과 한 칸을 띄어야 됩니다. 맨 첫 번째 페이지 보면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잘 띄셨어요. '조성 등' 한 칸을 띄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67쪽에 보시면 17조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에서 '중소기업 등을' 한 칸 띄어야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22페이지도 '실증기반등에', '인공지능등에', 어떤 것은 띄고 어떤 것은 그냥 붙이고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잘 챙기셔서 자구 수정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22대 국회 과방위가 만드는 법안이니까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적으로 약칭을 할 때는, '등'을 띄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16조의 "중소기업등"을 따옴표를 붙여서 약칭을 할 때는 법제적으로 '중소기업등'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제적인 약속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 ○**노종면 위원** 그것은 있으면 바꿔야 될 약속 같은데요.
- ○**이정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된……
- ○**노종면 위원** 진짜 듣도 보도 못 한 문법이고 듣도 보도 못 한 표현법인데요.
- ○소위원장 김현 그것은 저희가 자구 수정······
- ○**노종면 위원** 관행인 것 같아요.
- ○이정헌 위원 그런 법률안의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꿀 것은 바꿔 나가야 되는, 아까 '이루어'를 '이뤄'로 바꾸는 것처럼 말이지요. 논의가 필요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다음에 지금 고위험·고영향은 고위험으로 그냥 가는 걸로 할까요?
- ○**신성범 위원** 아니아니, 저는……

신성범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의견을 많이 들어 봤는데 미국도 보니까 고위험이 아니라…… AI 안보각서를 아마 10월 달에 발표한 모양인데 정부안을 보니까 고위험이 아니라 고영향, 하이 임팩트로 했다 그래요, 하이 임팩트 AI.

- ○**이해민 위원** 위원장님,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세요.
- ○이해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가지고 관련된 입장문을 조금 적어 왔는데 읽음으로써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법안은 단순한 기술의 진흥과 규제가 아닌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철학을 담는 작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고, 위험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회피해야 할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AI 시스템들을 보면 의료 AI, 금융 AI, 교통 AI 등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AI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는 분명히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를 고위험으로만 규정을 한다면 그 혁신적 잠재력과 긍정적 가능성보다는 위험성만 부각이 되고 필요 이상의 규제나 개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관련돼서 고위험이라고만 하게 된다면 예약시스템조차도 고위험, 이게 위험한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영향이라는 표현은 그 시스템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책임과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담을 수 있습니다. AI를 위험한 것으로 미리단정 짓지 않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 영향력을 현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법안은 오늘 논의한 바에 의하면 '영향받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AI가 이제는 직접적인 이용자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위험이라는 표현은 이런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영역까지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고영향이라는 개념은 AI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영향을 더 정확히 포착할 수 있습니다.

EU의 AI 액트나 미국의 AI 규제 논의에서도 점차 하이 리스크보다는 임팩트나 이펙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보고 그 영향력을 적절히 관리하려는 시도입니다. 고영향이라는 표현은 AI 기술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그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관리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제22대 국회 과방위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이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김장겸 위원** 김장겸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해민 위원에 동감하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여기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부대의견으로 붙여 가지고 넘기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한민수 위원** 말씀 끝나셨어요?
- ○김장겸 위원 예, 끝났어요.
-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저 얘기······

- ○소위원장 김현 얘기하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 ○한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현명하게 지금 판단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명하게 판단하는 건데, 일부 다른 쪽에서는 금지 AI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그리고 고영향과 고위험은 제가 볼 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어감이 주는 것도 다르고…… 여기 보면 우리가 금지를 하고 위험하다고 보는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에 대놓고 고영향이라고 하면, 고영향이라는 게 좋은 의미의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영향도 좋은 의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 ○한민수 위원 그래서 저는 영향이라는 표현보다는 고위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보다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AI 기본법의 기본 취지가 지금 계속 정부나 우리 논의됐던 게 발전과 규제라면서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AI 발전을 우리가 안 시키자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고위험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또 의견 있으신 분? 정부 측 의견도 얘기를 하시고······ 박충권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 ○박충권 위원 저도 아까는 고위험에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해민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또 이해민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과기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여러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딱하나만 기준을 살펴보라 그러시면 이 법에 대한, 진짜 이 소위에 대한 관심과 내용이 생각 밖으로 엄청 많은 상태에서 영향이라는 표현 자체를 끌고 오는 이 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고영향이라는 용어 자체를 놓치기는 조금 아까운 상황입니다.

위험이라는 문제를 부각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타당한 말씀이고 저희 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행정명령을 바라보면 아예 AI 그 자체는 기술 중립적이나 앞으로 영향성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임팩트라는 부분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부 내용들은 다 규제로서 일정한 조율과 내용들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위원회에서 조금 더 이 의미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고영향이라는 표현이 지금 국제적인 트렌드에서는 조금 더 부합되고 우리 상임 위에서 법이 통과되면 가장 앞선 표현도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이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의견 역시도 존중하는 바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제가 최종적으로 위험이라는 걸 선택하게 된 것은 EU의 AI법은 인공지능의 위험 정도에 따라 노 리스크, 하이 리스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그게 워낙 지금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다 수용이 된 상황이어서 많이 사용하는 위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위원 그러니까 AI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규제 필요성을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해 온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영향으로 바꿨을 경우에 상당히 국회나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연구를 좀 해 봤는데…… 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과 영향 사이 중간지점에 뭔가 단어가 없을까 계속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팩트 하면 충격과 타격 뭐…… 아까 강도도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그런 중간지대의 적합한 단어가 없을까, 제가 오늘부터 한번 계속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 ○박충권 위원 그 말씀에 동의를……
- ○**김우영 위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 ○박충권 위원 어떤……
- ○김우영 위원 안전영향인공지능.
- ○소위원장 김현 예.

(웃음소리)

자,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9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가결되기 전에 고영향……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일부 조금 확정이 안 된 부분은 위원장 님한테 위임을……
- ○**신성범 위원** 위임해야지.
- ○**소위원장 김현** 예, 그렇게 해서……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래서 과기부랑 협의해서······
- ○소위원장 김현 제가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고민이 좀 필요해서, 위험과 영향을 사이에 두고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이 있어 방통위 부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단통법 관련 소위 자료가 총 3권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큰 소위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폐지법률안부터 제24항 전기 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3건은 단통법 폐지 관련 내용으로 지난 소위에서 조문별로 설명드렸으므로 새로 추가된 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충권 의원님 안과 김현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조의11은 선택약정할인제도에서 박충권 의원님 안은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현 의원님 안은 요금할인 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대신하는 방식은 지원금 규모 상향 시 요금할인 규모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지원금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지원금과 요금할인 간의 연계성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서 김현 의원님 안은 사업자가 요금할인율(25%)을 임의로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약정할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규정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가입유형,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구체적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여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단통법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김현 의원님 안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1항 및 제2 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을 보시면 제7항부터 제11항은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임 부여 규정으로 단말기 유통 실태 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통위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4쪽을 보시면 김현 의원님 안은 제조사별 장려금 제출 규정으로 이동통신사업 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 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 실익에 비해서 제조사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이 클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과기부 및 방통위의 의견과 제조사별 장려금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 당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의도치 않게 해외 유통사의 마진만 높여 줄 가능성이 있고 해외 이통사들의 추가 비용 요청을 막기 위해 장려금 규모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국내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내 제조사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별도 자료로 되어 있는 이 자료입니다.

두 번째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안입니다.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38조의3제1항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 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기업 자회사의 알뜰폰 점 유율 확대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중소알뜰폰 사업자를 보 호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경쟁 감소로 인해 이용자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처 및 업계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안 제38조의3제2항은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재판매사업자 중 대기업 계열사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계열사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도록 하여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1항에서와 같은 이 유로 부처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별도 자료로 되어 있는 정부 제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우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관련 법안에 관련해서는 주셨던 내용 중에 지원금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에 저희가 의견을 드렸더니 제조사의 자료제출에 대한 투명성 부분도 소 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타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충권 의원님 안 중에서 김현 의원님 주셨던 유보신고제 안에 SK는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충권 의원님 안에 더해서 유보신고제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방통위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조속히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별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2조에 대해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등을 위해서 대리점·판매점, 지원금·장려금 등 단말기유통법상 정의 조항들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32조의11 유보신고제 부분입니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야당안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2조의12 차별 금지 조항과 관련되어서는 차별 금지 이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사업자 간 다양한 지원금,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법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 그리고 여야 모두 이관에 동의하고 있는 이통사의 부당한 지원금 차별 지시·유도 금지는 단통법 9조와 관련되었던 조항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조사 불공정과 관련된 34페이지, 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야당안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 니다.

그리고 제조사 자료 제출과 관련된 52페이지, 32조의19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별 장려금 구분 제출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단말기출고가 인하 유도 효과가 불분명하고 규제 실익에 비해서 글로벌 제조사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려금을 주로 제공하는 국내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민 위원님 얘기하세요.
- ○**이해민 위원** 정부 쪽에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점유율 한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60%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단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만 지금 드린 상태입니다.
- ○이해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60%로 숫자를 박는 부분에 대해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국회 소위의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점유율에 대해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 법안 논의하고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입법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알뜰폰에 대해서 이통사 자회사 문제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다만 그것을 점유율 규제에 사전적으로 적용할 거 냐의 문제, 아니면 다른 입법의 방식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 이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이해민 위원** 그리고 지금 포용법은 안 하는 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다음에……
- ○이해민 위원 저는 32조의11에 대해서 지원금 상한제 규제가 사라지면 할인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김현 의원님 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32조의12 같은 경우는 저는 수용을 하는데 한 가지는 남겨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거주 지역, 나이까지 다 빼 버리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큰 방향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특정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주 지역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 의견을 밝힙니다.

- ○**이상휘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

지금 오신 거예요?

- ○**이상휘 위원** 아까 왔어요.
- ○소위원장 김현 그런데 아까 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상휘 위원 조용히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서, 과메기 홍보 행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아침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32조의19에 대한 부분인데 제조사별 장려금 부분이지요. 저도 기업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조사가 지금 삼성 하나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국내에서는 삼성하고 애플, 2개가 지금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제조사별 장려금은 물론 시장에 대한 교란적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제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법으로 해서 외부에 공개가 되면—삼성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해외 회사들한테 상당히 견제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자칫 해외 이통사들의 마진만 높여 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느 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국내 제조사들 또 해외 이통사들 추가 비용 요청을 막기 위해서 장려금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유통 활성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될 수 있다라는 부 분입니다.

그래서 의견입니다만 제조사별 장려금 제출 조항은 기존 단통법과 동일하게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가 구별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 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저희도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박충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이게 지금 단통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사들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지원금 차별 관련해서 김현 의원님 안에 보면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이 있는데 어떤 것이 우려돼셔서 이런 조항을 넣으셨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단통법 폐지 취지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쨌든 이통사들 간에 서로 지급이 차별이 있어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폐지 취지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무대행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금지 조항 이런 걸 통해서 지원금이 취약계층이나 일부 국민에게 좀 부당하게 차별 지급되는 것 관련해서 처벌이 가능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단통법 9조의 취지가 그대로 김현 의원님 안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그 부분을 그러한 것들로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부당 차별을 조치하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 ○박충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차별 지급하지 말라라고 금지 조항을 넣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에 단통법이 있던 때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보여 가지고,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사가—아까 이상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제출해라라고 하게 되면 해외 이통사들에게도 이 규모가 알려지게되고 그러면 해외 이통사들도 동일한, 유사 수준의 장려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제조사만 손해 보고 해외 이통사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게 영업기밀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제조사가 이통사들마다 얼마큼의 장려금을 지급하는지가 그게 공개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영업, 판매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괜히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규모가 비슷해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경쟁이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제조사가 그러면 그냥 모든 국내외 이통사, 통신 3사에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장려금을 줄이는 결과가 빚어질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결국 이게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 같은 요구들이, 그 지원금에 대해서 요구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제조사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 ○**박충권 위원** 하여튼 저는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민수 위원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을 이관하는 문제는 지금 단통법을 폐지하는 차 원에서 보면 정부 의견에 일부 타당성이 있어서 수용할 만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데 지금 제조사별 장려금을 제출하도록 구분해서 하는 것, 지금 이통사들은 보고 하고 있지요?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민수 위원** 그러면 이통사들이 제출해 가지고 이게 단 한 번이라도 외부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요구는 많으신데 아직 제출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한민수 위원** 안 하고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 ○**이상휘 위원** 제출 아직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 ○**한민수 위원** 아니, 그런데 장려금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아니, 저희가 대외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영업기밀,

비밀, 영업 활동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게 과기부나 방통위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이나 제삼자에 공개되는 것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알려진 적도 없고 그래서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제조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해외와 국내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공개해 봐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김현 간사님 이 안도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노출될 우려가 사실 있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도하게 좀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어차피 우리가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이유는 다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랄지혜택을 많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 아닙니까, 기업들 입장을 보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정부 입장이 신중 검토인데 저는 이것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기업의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지만단순히……

어차피 공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는데 이것을 하면 공개되기 때문에 영업 활동에 악영향이 올 거다? 글쎄요. 그런 기업의 일방적 입장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헌 위원** 저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장려금에 대해서는 지나친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과기부나 방통위에서는 장려금의 규모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완전히 무한경쟁 체제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려금의 규모가 일반이나 제삼자에게 공개된 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장려금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그동안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과기부와 방통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업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겨 버리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원금에 대한 경쟁 유인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에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문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지나치게 번호이동이라든지 신규가입, 기기변경 이런 차별적인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그 항목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나……

다만 차별 지급 금지하는 조문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언적으로 이것을 조문을 남겨 둘 필요는 있고요.

다만 이것을 완전히 없앨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세부적인 차별 지급 금지 항목은 삭제를 하되 선언적인 의미에서 차별 지급 금지의 조문은 남겨 두자라고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저는 간사님 안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경쟁을 유발하면 그게 소비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그 논리는 사실 비합리적이지요. 만약에 경쟁해서 그게 다 고객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러

면 결국 기업이 망하지요.

어딘가로 전가해서 기업의 이익을 유지한다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경쟁만 다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고객에게 혜택이 간다는 그 전제 자체가 저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소를 제어하는 것이 이 법의 본질적인 기능이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입장입니다.

○이정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동안에 이 단통법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모든 것들을 다 규제함으로 인해서 통신사별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웠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통법 폐지의 필요성도 제기됐던 부분이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효율적으로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들을 선언적으로 남겨 두고 너무 세부적으로 규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 간의 어떤 경쟁력을 해치는 부분은 또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지나치게 규제해 버리면 단통법 폐지와 수정에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4쪽이지요. 단말기유통법의 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에서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1·2·3호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자라는 의견이신가요?

○이해민 위원 32조의12에 대해서 거주 지역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남겨 두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1호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그다음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이게 기존에 단통법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그러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은 살리되 나머지 1·2호는 삭제해도 된다, 이 수정 제안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장님, 32조의11 관련해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이것을 어기게 되면 뒤에 보면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왜 그러냐면 뒤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살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러니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심에 있어서 이게 선언적 규정이 아니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뒤에 3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벌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국민들이 이 조항을 보면 이렇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살리자는 의미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부분이 차별 적 지급인지 이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성도 있고 또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시고 그런 부분 고려하실 때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이정헌 위원 맞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말씀하시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3억 원의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세부적인 항목을 약간 수정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예, 한민수 위원님.
- ○한민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두 분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데 이 조항이 사실 단통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통법을 지금 폐지하려고 여당이나 민주당이나 하는 이유가 이런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큰 혜택을 주지는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다 가져오기보다는 좀 전에 이정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도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남겨 놓고 그 안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충권 위원** 저도 의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별 지급 관련해서는 지금 이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언적 문구를 남겨 두고 이것을 좀, 선언적 문구도 '차별적 지급해서는 아니된 다'라는 강제적인 문구보다는 '차별 지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이런 방식으로 좀 순화시키고 세부 내용들은 좀 이렇게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아까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이용자 거주지, 나이, 신체적 조건 이런 조항은 남겨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세부 조항은 좀 빼고 선언적인 문구만 남겨 주면 어떨까……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만약 박충권 위원님 노력 규정으로 하면 뒤에 벌칙 규정은 없어야 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지금 저희들도 절충……
- ○**소위원장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저희들도 절충안 부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선언적인 앞부분, 본문 부분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구체적인 각 호가 없는 상태에서 선언적인 내용만 나오면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선뜻 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선언적 의미를 남기시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뒤의 벌칙 조항하고의 연계를 끊어 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끊어 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노종면 위원** 저는……
- ○**이정헌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걸 끊어 내든가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소위원장 김현** 그래서 제가 수정 제안을 하면……
- ○노종면 위원 저 의견 하나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세요.
- ○노종면 위원 제가 이 버튼 눌렀다가 끈 게 벌써 한 세 번째 돼요, 발언 기회를 안 주 셔 가지고.

○**소위원장 김현** 아, 죄송합니다.

○노종면 위원 경쟁 만능주의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원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날수가 없는 게, 차별적인 지원금 그래서 막 통신사별로 어지러운 상품이 나오고 지원금체계가 나오면 시장이 교란될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 걸 거쳐서 단통법을 만들었던거고 그런데 또 혜택이 안 돌아오니까 다시 또 돌아가려는 이런 큰 흐름에서 보면 결국은 통신요금의 문제다. 그래서 32조의12는 저는 2호, 3호를 유지하는 정도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금제와 지원금을 연계해서 지원금이 세면 요금제가 좀 더 소비자한테 불리하고 그런 조합을 통해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아 닐까…… 이게 지금도 보면 수도 없이 별의별 지원금이 있어요, 천차만별이고. 내가 가입 했는데 다른 상품이, 다른 지원 체계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또 바꿔야 됩니까, 따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시장이 더 교란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막 휩쓸려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32조의12, 간사님 안에서 1호를 삭제하는 정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헌 위원** 번호이동, 신규가입 이 부분이요?
- ○노종면 위원 아, 2호를 삭제하는 것. 그러니까 요금제와 연계한 지원금은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 게 소비자 이익에 부합한다.
- ○이정헌 위원 요금제 이 부분은 빼자?
- ○노종면 위원 예.
- **○이정헌 위원** 1번하고 3번은 놔 두고?
- ○**노종면 위원** 그렇지요. 1, 3은 유지하자.
- ○이정헌 위원 1, 3은 유지하자? 이런 수정안이 필요합니다.
- ○**박충권 위원** 1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 ○**노종면 위원** 결국 이런 시장을 교란하는 지원금은 1호에서 다 나오거든요.
- ○박충권 위원 그러면 이통사 간 경쟁이 잘 안 되는데……
- ○**이정헌 위원** 그래서 혜택이 없는 건데, 이걸 지나치게 규제해서.
- ○노종면 위원 결국은 새 단말기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 ○**박충권 위원** 맞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결국에 취지가 이통사들 간에 경쟁을 하게 하는 건데 번호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경쟁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살때 가격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서 사는 분들이 있고 또 특히나 $20\sim30$ 대와 같이 자금력이 좋지 못한 세대들은 찾아다니면서 싼 거 찾아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취지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노종면 위원 박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저해할 수도 있다. 지금 그동안 보면 후발 업체들이 기발한 요금제를

만들어서 특히나 젊은 고객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전에 가족 결합 요금제 이런 것 본 적 있습니까? 업계에서 그런 노력을 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LG에는 없는 상품이 SKT에는 있어, 그러면 번호이동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지금 1호를 빼 버리면요 지금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더 양성화해서 막 그냥 봇물 터지 듯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별의별 지원 꼼수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얼마나 열리겠습니까.

- ○소위원장 김현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해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본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거주 지역이랄지 나이 관련해서는 꼭 지켜져야 된다,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 조정안에 따르겠습니다.
- ○이정헌 위원 위원장님, 저는 방금 노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제 이 부분을 좀 풀어서 경쟁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도 느끼는 부분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고요.

- ○소위원장 김현 높아지고 있지요.
- ○이정헌 위원 거의 비슷하고 계속 그냥 같이 막 올려 버리는 담합과 같은 비슷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단통법도 그렇고 또 수정하려고 하는 것들의 가장 큰 목적은 통신요금을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 부분은 좀 풀어 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자율적인 경쟁으로 인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그 상품을 보고 통신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의견 있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님, 당초에 정부 의견은 사실은 단통법을……
- ○소위원장 김현 고민 안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아닙니다. 폐지하는 거였기 때문에……
- ○소위원장 김현 폐지만 하자고 그러고 그 뒤엣것을 고민 안 했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32조의12에 대해서는 없는 게 사실은 맞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32조의12의 2호를, 요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사실은 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1호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번호를 이동하거나 기기를 변경할 때 뭔가 지원금을 줘서 활성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1호가 사실은 단통법에 있어서 효과에서는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는 걸 전제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원래 금지행위 조항에, 뒤쪽에 저희가 이것으로 단속이나 내용을, 차별에 대해서는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정헌 위원님 선언적 의미 부분 그리고……

-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노종면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조금 더…… 2호를 말씀을 주셔서 그렇고, 한민수 위원님 주신 말씀을 쭉 조합을 해 보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32조의12에 여러 가지 선언적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현재 뒤의 금지행위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에 선언적 의미 내지는 또 이해민 위원님 주셨던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구조는 어떨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봅니다.

다만 현재 상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이 조항이 그대로 있다라는 혹시나 대외적인 비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은 1, 2, 3 중에 3은……

- ○**박충권 위원** 3은 오케이고……
- **○소위원장 김현** 3은 오케이, 1, 2는……
- ○박충권 위원 1, 2는 없애는 게 좋겠다.
- ○**소위원장 김현** 삭제.
 - 그다음에 노종면 위원은 1, 3은 살리고 2는 삭제.
 - 3은 다 존치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 그다음에 한민수 위원님도 3은 존치.
- ○한민수 위원 그것까지는 뭐……
- **○소위원장 김현** 3은 존치.
- ○이정헌 위원 아니면 1번에서 가입 유형에 대한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살릴 건 살리고 없앨 건 없애는 방법은 어떨까, 이 부분도 약간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이동과 관련해서 그래도 장려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번호이동은 삭제를 하고 신규가입, 기기변경 이런 것들 중의 하나라든지 두 개만 남겨 놓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가입유형을 좀 세분화해서? 전체를 다 없애거나 존치하거나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지 말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현장에서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는 거의 같은 역할이 있어서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각 호의 부분이 조정이나 삭제가 된다면 선언적 의미를 두는 것이 사실은 여러가지 절충안 중의 하나일 것 같고요. 단통법 폐지를 한다고 전제를 하고 이번에 반드시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조항의 일부가 살아 있을 때 나타나는 다른 의견들, 단통법 폐지 그 점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예, 얘기하십시오.
- ○**한민수 위원** 다들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요. 단통법을 처음에 2013년에 했습니까?
- ○**소위원장 김현** 2014년.
- ○한민수 위원 2014년에 들어왔을 때 단통법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보다 이득을 많이 보고 저렴하게 단말기도 구입하고 통신요금도 내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건데 사실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폐지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조항들이

이미 단통법에 있던 조항들인데 사실 소비자 혜택보다는 아무튼 제조사나 이통사에게 이득이 많이 가는 구조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촉발해서 보다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보자는 취지라고 본다면 저는 1번과 2번, 3번은 뭐 아무튼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1·2번은, 일단 그냥 다 가져온다는 건 아닌것 같아요. 1번을 또 나눈다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1항에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그래서 '1항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렇게 조항을…… 1, 2를 삭제하고 3호 조항만 1항으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고요.

- ○이정헌 위원 예,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 ○소위원장 김현 그다음에 다른 의견 주십시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이해민 위원 아까 32조의19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의 의견 또한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김현 위원장님 안 수용 입장이고요. 우려는 이해를 합니다. 우려는 이해를 하는데 단통법 시행하고 나서, 사실 이게 원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3년간 전혀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 장려금 규모는 정부에만 제출을 하는 거고 일반과 제3자에는 제공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제공하지 못하게?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법 시행의 목적 이외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해민 위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 판매장려금 규모를 파악하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을 했을 때 김현 위원장님 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신고제 적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에 대해서는 이상휘 위원이 얘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법을 폐지하면서, 개정하면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을 믿고 이 조항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이정헌 위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의견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제가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 제조사가 장려금을 공개를 하게 조항을 넣는다 그러면 지금 이통사는 제출을 어떻게, 과기부에 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 장려금을 받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지금 현행법대로 받고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이통사는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있고요.

○박충권 위원 그러면 제조사가 이걸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지점이 우려되는 게 혹시 있는지…… 아까 이상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될 우려가 있고 이게 영업비밀에 해당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통사별로 차등 지급될 수도 있는 거고, 국내의. 그리고 해외의 이통사들에도 장려금이 나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랑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해외 이통사에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우려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매우 조심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지급률이 어떨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외보다 국내가 많을 경우 아니면 적을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단통법 처음에 할 때 정부는 분리공시제까지도 강하게 주장을 했던 입장이 었습니다마는 실제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게 제조사가 국내 업체가 하나 그리고 애플이 하 나 이런 상태에 있다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 잘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현재 법제도에서 이게 입법적으로—어젯밤에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희도 결론을 못 냈는데—법 시행의 목적 이외에 제3자 또는 대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재의 문구입니다. 그래서 박충권 의원님 안에 전체적으 로 해서 제출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새롭게 논의하는 안에 대해서는 뒤에 '법 시행의 목적 이외에'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법 시행 목적이라면 또 제공될 수 있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국회 소위에서 합의해서 논의해 주신다면 단통법은 통과가 돼야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제3자에 제공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명확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 ○박충권 위원 한다 그러면 정말……
- ○소위원장 김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목에서 지금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문구가 나올 수 있나요? 지금 그거라면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

국회를 걱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기부나 방통위 자체에서 나가는 것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국회를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 ○**소위원장 김현** 그럼 뭐 없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요구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 상태에서……
- ○**박충권 위원** 국회를 걱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비밀이 있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에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 그다음에 경쟁 관계가 지금 사라지고 낮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을 인하하려면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박충권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파이를 키워서 혜택이 국민에게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파이를 키우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냐하면, 삼성전자가 단말기 제조사니까 메인이 되겠지요. 이 제조사의 영업전략에 따라서 때로는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외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내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내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애플이라는 미국 제조업체를 점유율에서는 이제 겨우 앞섰다고는 하지만 지금 중국의 휴대폰 제조사들도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제조사에다가 목에 방울을 달아 놓는, 그래서 시장을 확대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많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게 되면 삼성전자만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제조사가 국내에서는 삼성밖에 없으니까……
- ○**김장겸 위원** 그러니까 애플이나 혹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의 어떤 제조사는 이 게 해당이 안 되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법상으로는 대상이 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법상으로는 당연히 되겠지요.
- ○김장겸 위원 법상으로는 되는데 제출할까요?
- ○박충권 위원 절대 안 하겠지요.
- ○**소위원장 김현** 제출 안 하면 이제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지요.
- ○**김장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이렇게 되면 단말기 출고가가 좀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차관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 지점이 문제인데 조금 상황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말기 업체의 경쟁이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제출에 대한 의무에 보안이나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 ○김장겸 위원 그걸 강화해야 하겠네요.
- ○**이해민 위원** 저희 이것 논의하는 데 약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는 주체가 제조사가 아니라 이통사잖아요.
- ○**소위원장 김현** 예, 이통사입니다.
- ○이해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조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다른 데로 퍼지지 않게끔 가드 치는 것은 저는 좋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려, 제조사에 대한 우려는 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참고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이 부분에서 부처 실무자들은 주로 우려하는 것이 국회증언감정법 4조에 보면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것 외에는 증감법에 따라 요구하면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우려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지요.
- ○**노종면 위원** 내야지요, 비밀도 내는데. 그러면 그 법을 없애든가.
- ○김장겸 위원 그것 보완하는 문구가 어떻게 안 되나요?
-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담합 구조를 깨자는 게, 국민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게 사실은 단통법 폐지의 의미지 않습니까? 담합 구조를 이제는 깰필요가 있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 그래서 그것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킬지 아닐지는 법이 시행되고 6개월 지난 이후부터 되는 거고, 그 전부터 이통사들이 논의나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그에 따르는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폐지하자고 그러고는 손놓고 있었어요. 1년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안 해도 될 듯합니다.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시지요.

- ○박충권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 ○소위원장 김현 이통사가 제출한다는,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증감법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건데 그것은 국회가 제출하라고 그래도 많은 부분 제출하지 않잖아요. 꼭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불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300만 원인가도 안 돼요.

- ○**노종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제 얘기는……
- ○**노종면 위원** 회피 수단을 알려 주시면 안 되지요.
- ○소위원장 김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 때문에 신중 검토나 반대하는 것이라면 시행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더 옳은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지요, 세 가지?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뒤에 별도 자료로 되어 있는 알뜰폰 사업자 점유율 제한 그 내용……
- ○소위원장 김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중에 점유율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알뜰폰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이해민 위원 이것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수용 의견인데요. 딱 하나 점유율 한도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받아들이는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고 뚜렷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공정거래법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50%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해서 이 법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서 점유율을 60으로 한정함에 있는 문제점을 정부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제 의견이고, 정부는 지금 신중 검토 의견······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뜰폰 시장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단 정부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이통사 계열사들에 대한 자회사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때 답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폰의 도매대가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 종합적인 발표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알뜰폰의 중요성은 시장을 경쟁 체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는 알뜰폰의 대형화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전적으로 60%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또 계열 사 포함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부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실제로 이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적인 60% 점유율 한계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문제에 어려 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통사 자회사에 대한 규제 문제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정식으로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등록 요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알뜰폰이 처음 시작했을 때 50% 제한을 두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고 범위와 내용을 다시 재정리하면서 사업자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뜰폰에 대한 제조사의…… 이통사 계열사에 대한 규제는, 시장 점유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기타 영역에 있어서의 알뜰폰을 통한 통신에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알뜰폰의 대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이 바로 됐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저희로서는 아까 법 문구에 대한 문제를 말씀 올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절충안으로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 파트에서 중소사업자의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을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희 정부에 책무를 강조해주시고, 도매 제공 사업자 및 그 계열사에 대해서 재판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부분에 조건이나 그리고 조건의 변경까지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방통위 얘기해 보시지요.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방통위가 이견이 존재하잖아요. 이 문 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이통 3사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있는 거고, 그건 존재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이 지금 찬성인 거지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알뜰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은,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용 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지금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방통위의 의견은……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검토해서……
- ○소위원장 김현 왜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야지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글쎄요, 이것 어차피 과기부에서 관할해서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노종면 위원님은 찬성 의견 하셨고 그다음에 이해민 위원님도 찬성 의견이고……
- ○이해민 위원 저는 정부 쪽만 걱정했을 뿐 오케이면 저는 찬성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예.
- ○박충권 위원 여러 이통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해 가지고 더 저렴한 가격의 알뜰폰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한치를 너무 제한을 두게 되면 그 상한치에 도달하는 순간 경쟁이 멈춰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이동사 계열사에 대한 상한제를 일정히 정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국감 때 저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과 내용을 어떻게 둘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을 포함해서 사전적으로 60%를 둘 거냐 아니면 지금 하는 것처럼 알뜰폰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IoT를 포함한 전체에 50%의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등록 요건으로 알뜰폰이통 계열사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후자가 더 맞다고 판단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적으로 60% 되는 부분은 시장 점유율 규제 자체를 법률로 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법과 내용이……
- ○**박충권 위원** 위헌적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헌 여부는 신중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 튼 전체적인 추세와 내용이 그쪽 분야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입법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봐서,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입법의 방식과 내용도……
-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 ○박충권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보니까 골목상권하고 대형마트의 경쟁 시장을 분리해 놓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 ○**소위원장 김현** 그게 아니고요.
- ○박충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기업 관련된……
- ○소위원장 김현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50%로 기준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규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로서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고 그래서 알뜰폰을 제조하는 시장을 만들어 주자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알뜰폰 시장, 지금 말씀대로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인설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론화하자는 취지입니다.
 - 그래서 지금 과기부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을 만들어 준 거면 찬성해야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말고 좀 규격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시지요.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만든 거고, 그 외에도 사실은 초과 금지 조항이 있는 것에서 이게 위헌 소지다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한 가지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8페이지에 보시면 '재판매 사업자 중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이 말이 재판매 사업자 전체 수 중에서 대기업 계열사 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 수가 7개 정도 되는데 10개 이하로 한다든지 이 말인지 아니면 대기업 계열사별 수를 제한하겠다는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SKT가 하나, LG가 둘, KT가 둘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대기업 계열사별로 수를 제한하겠다는 의미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너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포괄 위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라는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 ○소위원장 김현 그렇게 해서 지금 수정의견으로 하신 것에는……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아닙니다. 지금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했고.
- ○소위원장 김현 논의가 필요하다?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부 의견 한번 들어 보고 일단 둘 중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재판매 사업자 전체 수에서 대기업 계열사 전체를 합쳐서 제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계열사별로……
- ○소위원장 김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어느 쪽을 의미하게 할 건지 그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수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아직 숫자는 있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숫자를 정하는 부분이 입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현재 타당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래서 저희가 둘 중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전체 대기업 계열사 수를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 계열사별로 수를 제한할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저희가요?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왜냐하면 이 조문 자체가 모호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이게 원래 있던 것 아닙니까?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8쪽에 보시면……
- ○**소위원장 김현** 계열사별로.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계열사별로?
- ○**소위원장 김현** 예, 그게 그 말이에요, 계열사별로.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다음은 계열사별로 하는데 이 수를 지금은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했는데 그 수를 이렇게 위임해 버리면 너무 포괄 위임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기준을 좀 정해 주는 게, 지금 한 2개까지……
- ○소위원장 김현 아니, 그게 법 안에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가입자 수의 5분의 3.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 조항이 아니고, 그것은 점유율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 재 판매 사업자 중 대기업 계열사 수를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 ○**노종면 위원** 의견 좀 내도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계열사 수는 새로운 것을 인수시켜서 합병을 시킬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계열사별로도 퍼센티지, 시장 점유율을 규정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 규정을 해 놔도.

- **○소위원장 김현** 계열사의·······
-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알뜰폰 사업 계열사를 만들잖아요. 그 숫자를 3개로 하든 1개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SKT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 ○소위원장 김현 그렇지요. 전체에서 그걸 넘지 마라……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러면 이 부분은 빼도 되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 ○소위원장 김현 그래도 돼요? 빼도 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 ○박충권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부처 간에도 아직 제대로 논의가 잘 안 된, 입장이 안정해진 것 같고 기업들도 단통법에 해당이 되는 주체들 간에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계류해서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아니, 이것을 안 하면 알뜰폰 제조사들이 되게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 단위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한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에서 과도하게 조각조각 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50%니까이렇게 해도 60%를 넘기지 않는…… 지금 등록 요건이 50%잖아요, 현재 있는 요건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IoT 포함해서 이통사 계열사는 50%로 지금……
- ○소위원장 김현 그래서 60%로 완화, 그러니까 대기업의 계열사에게는 사실은 10%를 더 올려 주는 거고 알뜰폰 시장은 70%, 80%까지 해서 중소 폰 제조사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 주니까 만들고 나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또 개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냥 없는 것으로 갈 게 아니라.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반대하시는……

- ○김장겸 위원 저는 약간 보류해서 더 논의했으면……
- ○**소위원장 김현** 보류하자는 거고, 진행하자는 거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까요? 표결로 이것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긴 한데 표결을 해야 되는……

- ○**박충권 위원** 계류해서 좀 더 논의합시다.
- **○소위원장 김현** 이것만?
- ○**박충권 위원** 예, 이것만.

-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 ○**박충권 위원** 논의가 좁혀지지 않은 것만 골라 가지고 다시 한번……
- ○소위원장 김현 이것만 지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엣것은 대략······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단통법 관련은 정리하셨고,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논의하 시면……
- ○소위원장 김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 ○박충권 위원 차관님, 이것 점유율 이외에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다시 소위 하실 때 저희들 더 준비해 오겠습니다. 사업자 수 문제가 당초에는 하나하나, 1사 1사 하다가 합병돼서 노종면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지금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어서 2항을 어떻게 갈지는 저희도 입장을 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 ○박충권 위원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더 명확한 다른 방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2시에 속개를 해야 되는데, 2시에 해야 된다고. 논의를 다 못 했거든 요.
- **○김장겸 위원** 2시 반.
- ○노종면 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의결 안 하실 거지요?
- ○소위원장 김현 지금 다 됐어요. 다 됐으니까 방망이만 하면 되고.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간사님, 그 전에 좀 정리할 게 있는데요.

우선 단통법 관련해서 김현 의원님 안은 부칙에서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박충권 의원님 안대로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소위 자료에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법제처에서 법령 정비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서 처분하도록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 그것까지 대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 ○**한민수 위원** 세 번째 얘기하신 그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세 번째.
-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22·2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31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디지털포용법안 및 관련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 등 7건 중 4건에 대하여는 지난 소위에서 조문별로 설명드렸으므로 새로 추가 된 3건의 법안을 통합하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대안 중 지난 소위 대안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규정별로 설명을 드리면,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포용을 정의함에 있어서 '지향점'이라는 문구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 보면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있게 하는 대체수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해소)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역기능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키오스크를 제조·임대하는 자에게도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을 보시면, 제27조(디지털포용 기술 연구·개발)로 정부의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9조(연구개발기반의조성)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 페이지를 보시면, 128쪽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4건의 개정안이 디지털포용법안 어디에 반영되는지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게 주요 바뀐 부분이고 이것 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포용위원회를 박민 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해서 여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 의견 없으신 건 아니지요, 한민수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 ○한민수 위원 왜 없겠습니까.
-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세요.
- ○**한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해민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13조 부분에서 디지털역량센터 관련해서 이 부분은 혹시, 제가 인기협 쪽의 의견 또한 같이 읽어 봤는데 이건 기존의 과기정통부 디지털배움센터 사업 NIA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 우려가 있지는 않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만……
 - NIA에 있는 디지털역량……
- ○이해민 위원 디지털배움센터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지는 않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아닙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NIA에서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점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NIA에서 직접 하지 않고 거점센터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됩니다. 법적 용어로는 디지털역량센터로 되어 있고요. 지금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곳을 NIA의 디지털역량지원센터로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 ○한민수 위원 이해민 위원님 말씀은 그래서 중복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아닙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 ○**이해민 위원**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1항의 디지털역량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배움터의 거점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66쪽의 3항을 보시면 디지털역량지원센터라고 나오는데 이게 NIA의 디지털포용본부를 지칭하는 겁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래서 행안부 의견 보면 '디지털센터의 설치라는 문구가 하부조직 신설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이렇게 돼 있네요. 바로 보여 주셨습니다, 이해민 위원님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그래서 '설치'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한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지정'으로 한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김장겸 의원안으로 된 겁니다, 15조.
 - 더 없으시면…… 없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31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정헌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세요.
- ○**이정헌 위원** 오전에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요청드렀습니다.

이해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고위험을 고영향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적절한 단어가 위험과 영향 사이에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만 적절한 단어를 찾기는 어렵고 제가 여러 차례 검토한 끝에 '고영향'을 받되 '고영향 인공지능'에서 규정할 때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존경하는 김장겸 위원님께서도 영향에 강력하게 동의를 하시는 의견을 주셨기때문에 이해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고위험'을 '고영향'으로 바꾸고 '고영향 인공지능'을 규정할 때 있어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항목이 추가돼서 수정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으로 나온 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이것 지금 깔아 드린……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이렇게, 아까 위원장님한테, 자구 정리를 위임받으셨 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현** 예, 그렇게 하시지요.

또 얘기하실 게 있으십니까?

- ○**한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고위험을 얘기했기 때문에……
 -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 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정보가 망법상 불법정보임을 명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류를 정의하고 있어 자구를 정리하는 수정이 필요하여서 수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약류 정보는 이미 현행 44조의7 제1항 9호의 불법정보, 즉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 정보가 새롭 게 불법정보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명시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마약류 정보의 유통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호를 신설해서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제2항의 개정 내용은 1항을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성범죄와 관련한 영상물인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의9에 마약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피해의 유형, 규제 방법 등이 상이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의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마약류 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은 마약류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안보다 더 강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마약류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마약에 대한 경각 심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마약류 정보 유통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몰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관리대상 정보에 마약류 정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법체계에 맞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개별 조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44조의7,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걸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불법 정보에 마약류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 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의견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걸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물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는 44조의9에 피해 유형, 규제 방법 등이 서로 상이한 마약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에 다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10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약류 매매, 소유 등의 정보 게시에 대해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형도 높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실익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몰수·추징과 관련해서는 마약류 정보 게시로 획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몰수·추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 규정을 만들실익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이정헌 위원 방금 말씀하신 정보통신망에서의 마약류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 없다는 부분이요.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는 거지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법정형도 보시면 거기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정헌 위원 그렇지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그래서 처벌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그 조항이 오히려 더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그게 더 실효적이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정헌 위원 직무대행께서 판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표시·광고의 공정화, 여기 표시·광고 이 문구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마약류 정보 유통까지도 같이 처벌할 수 있고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이것 가지고? 어떠세요? 지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이 부분이잖아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 ○**이정헌 위원** 그렇지요. 이걸로 정보통신망상에서 마약류 정보를 주고받거나 유통시키 는 것들을 처벌 가능한가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이정헌 위원 충분하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처벌 규정을 여기에 다룰 필요가 없고, 이걸 가지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마약류 정보 유통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정보통신망에서의 마약류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에 이 규정 양형을 3년 이하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하고 맞춰 버리는 걸로 해서 신설을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고, 만약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냥 맡겨 뒀는데 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병확하고, 반약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냥 맡겨 뒀는데 이 표시·광고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 의율해 가지고 처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일응은 저희들이 포섭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법정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건 챙겨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일응은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별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따로 또 해 보겠습니다.
- ○**이정헌 위원** 혹시라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저희들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나 하나 놓치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 ○이정헌 위원 예.
- ○이해민 위원 저는 마약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됨을 명시하는 4쪽 개정안 대비표에서 원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려고 했었는데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냄으로써 이 마약류 부분을 밑으로 빼서 넣는 식으로 이걸 변경해 오신 거지요, 수정의견이?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망법 44조의7 1항에 불법정보를 죽 1호부터 9호까지 나열하고 있고 9호에 보면 그야말로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이렇게 소위 자료 16쪽에 보시면 정리돼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도 마약류는 이 9호로 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 봐서 지금도 적용을 받는데 지금 1호부터 8호 같은 경우도 개별법에 이미 불법정보로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보면 필요성, 좀 더 강하게 불법정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호를 신설해서 그동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사회적 심각성 때문에호로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해민 위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지금 더 얘기 하셔야 돼요. 노종면 위원까지 와야 돼요.
- ○이해민 위원 할게요, 그러면.

책임자 지정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업무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쭈어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이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라서요.

이게 대개 아마 이미지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대상물들이 오나 봅니다. 그런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보다는 정보로 그다음에 언어로 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는 그 성격이 많이 달라서 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만약 필요하다면 또 별도로 그러한 책임자를 두고 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성격이 전혀 다르고 또 전문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첩해서 이렇게 책임,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썩 효율적이지는 않아 보여서 그렇게 의견을 드린 겁니다.

- ○이해민 위원 '않아 보여서'…… 의견이,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어서 방통위의 의견이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저희들 신중 검토 의견으로 일단 말씀……
- ○**이해민 위원** 신중 검토?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물로 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는 주로 성범죄나 이런 거와 관련된, 불촬물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데 마약류는 약간 좀 성격이 달라서 법체계상으로도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히……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규정이나 아니면 또 책임자를 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이해민 위원** 이 부분은 저는 방통위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3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거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3년 이하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 안은 1년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정헌 위원 이 법안 말고 기존에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거기에 정보통신망에 따른 마약류 유통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

그러니까 개별 법안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또 정보통신망법에다가 한 항으로, 호로 추가하는 것보다는 개별 법안을 좀 더 강화해서 그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예, 고려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이정헌 위원** 그렇잖아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그러니까 지금 마약류 관리법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정헌 위원** 그렇지요. 그 개별 법이 있으니까 그 개별 법안……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그리고 필요하다면 책임자 부분도 거기서 논의하는......
- ○**이정헌 위원**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강화돼 있는 것인데 굳이 2개 법안에 다가 다 넣는 것이 필요한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도 다른 개별 법안에 있는 것들도 호에다 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무슨 말인지, 예.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이게 아마 정보통신망으로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규율하자 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 ○이정헌 위원 다른 것도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다 있긴 한데,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고.
- ○소위원장 김현 양부남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으로 나온 거는 이 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다른 법으로 할 거냐 이 얘기도 지금 나온 거고요. 이정헌 위원님이……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마약류 관리법에도 현행 규정이 있기는 한데 더 어떤 마약류 유통 방지에 대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 **○이정헌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에 현행 정보통신망법 있잖아요. 거기에 8호에 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법안도 특정을 해서 써 놓았으니까 이것을 1호로, 우리가 마약류 관련된 것들을 1호로 개정을 한다고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1호에다 넣어도 괜찮겠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알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 ○**소위원장 김현** 그렇게 돼 있어요.
- ○이정헌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지금 4쪽 보시면 6의4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정헌 위원** 아, 그렇게 돼 있나요?
- ○소위원장 김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돼 있습니다.

- ○**이정헌 위원** 아, 그렇게? 그것을 유통하는 것?
- ○소위원장 김현 예.
- ○**이정헌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쟁점은 아까 처벌 규정?
-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래서 정리해 보면 44조의7 1항하고 2항 개정 부분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채택하지 않는 걸로 의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체계·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2차관,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우영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이정헌 이해민 한민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

정보통신정책관 억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